##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1541 제 안 일 자 : 2020년 6월 16일

제 안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#### 1. 수정이유

안 제2조제2항에서 '안전교육'의 정의가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해 석상의 충돌이 우려되는 바 이를 상위법령의 체계와 동일하게 수정하 는 한편, '안전문화활동의 육성·지원'과 관련된 조항의 경우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과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함 임.

#### 2. 주요골자

- 가. 상위법령인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과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 정의를 일치시킴. (안 제2조제2항)
- 나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'안전문화활동의 육성·지원'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일부 조문번호와 부칙을 수정함. (안 제7조 중 제1호.안 제8조, 부칙안 제2조)

###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「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"안전교육"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 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.
  - 2. "안전교육 전문인력"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.

안 제4조 중 "기본계획에 따라"를 "기본계획을 근거로"로 한다.

안 제7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, "제2호"를 "제1호"로, "제3호"를 "제2호"로, "제4호"를 "제3호"로 한다.

안 제8조를 삭제한다.

안 "제9조"를 "제8조"로, 안 "제10"조를 "제9조"로, 안 "제11조"를 "제10조"로 하고, 안 "제12조"를 "제11조"로 한다.

부칙안 제2조 중 "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"를 "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"로 하고, "제52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"를 "제53조를 삭제한다."로 하며, '제56조제5항을 삭제한다.'를 삭제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 ②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진, 화재, 해상사고, 감염병 등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한다)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"안전교육"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. 2. "안전교육 전문인력"이란 안전교육이나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.
제4조(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 별 안전교육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	제4조(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) ①
제7조(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) 시장은 안 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 1. 안전문화활동의 육성·지원 2.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3.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.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	제7조(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)
제8조(안전문화활동의 육성·지원)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시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관련 활동	<삭 제>

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③ 시장은 시민이 재난발생시 구조·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 ④ 시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·기관 및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.	
<u>제9조(</u>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) ① ~ ② (생 략)	제8조(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) (제정안과 같음)
<u>제10조</u> (사회 안전교육의 지원) ① ~ ③ (생 략)	<u>제9조</u> (사회 안전교육의 지원) (제정안과 같음)
제11조(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) ① ~ ② (생 략)	<u>제10조</u> (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) (제정안과 같음)
<u>제12조</u> (시행규칙) (생 략)	제11조(시행규칙) (제정안과 같음)
부 칙	부 칙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재난	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<u>서울특별시 재난 및</u>
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	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
<u>개정한다</u> .	<u> 정한다</u> .
제52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	제53조를 삭제한다.
제56조제5항을 삭제한다.	<u>&lt;삭 제&gt;</u>

#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"안전교육"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.
  - 2. "안전교육 전문인력"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③ 시장은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

-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안전교육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책을 실시할 때 자치구별로 균등한 교육기회와 환경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
  - 2.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
  - 3.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
  - 4.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
- 제5조(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)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·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6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)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

따라야 한다.

- 제7조(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)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1.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· 보급
  - 2.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  - 3.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
- 제8조(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) ① 시장은 시민들이 다양하고 균일한 안전교육 기회를 가지도록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·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·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(사회 안전교육의 지원)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,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,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
  - ③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·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- 제10조(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) ① 시장은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  - 1.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
  - 2.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  - 3.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
 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를 삭제한다.